

초 점 기 획

2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의 현황 및 지원제도

목 차

- I. 서론
- II. 산업기술연구조합
- III. 비영리 민간법인연구기관
- IV. 민간생산기술연구소
- V.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제도
- VI. 일본의 비영리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 VII. 결론

張東勳

KAIST 박사과정, 전 산기협 조사과장

I. 서론

국내기업 부설연구소는 '60년대에서 '70년대의 단순 실험실이나 개발실의 형태에서 '80년대초에는 독립 부설 연구소로, '80년대 중반부터는 민법 제32조에 의거 기업의 출연기금에 의한 비영리재단법인 연구기관이 설립되기 시작하고 법인격의 형태가 없는 각 계열기업의 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활동 중 그룹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을 결집시킨 종합연구소 형태의 연구소가 설립되기 시작하였으며 '90년대에 들어서 두산기술원과 같은 연구중심형 연구조합이 설립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연구소 형태의 변화는 기업외적 요인과 기업내적 요인에 의하여 추진되어 왔다. 기업외적 요인으로는 ①'80년대 중반이후 선진국의 신기술 또는 첨단기술의 이전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② 기술개발의 고도화현상에 의한 기업의 연구개발이 기초연구에서부터 제품연구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수행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과거의 단순한 국내기업간의 경쟁에서 벗어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경영에 직결되지 아니하는 전략적 과제 및 장기적 과제도 수행할 수 밖에 없는 경영환경으로 변화되었으며 내적으로는 ① 연구개발의 대규모화로 효율적인 자원배분 및 중복투자를 배제하기 위한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중재의 필요성 ② 기업의 단기적 경영성과 또는 최고경영자의 의지에 따른 연구개발투자의 불안정성요인제거를 통하여 연구소의 자율성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관련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을 근거로 설립되는 산업기술연구조합,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되는 비영리 연구법인, 공업 및 에너지 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되는 비영리특수법인인 민간생산기술연구소로 구분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법률적 형태에 따른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대한 설립현황 및 각각의 정부 정책지원제도를 살펴보고 이들간의 장단점과 선진국인 일본의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제도를 살펴보고 향후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산업기술연구조합

산업기술연구조합은 첨단기술 및 공통애로 기술의 협동연구를 목적으로 1910년경에 영국에서 창안·시도되어 유럽지역으로 확산되었으며 1961년 일본에, 우리나라는 1977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1982년에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시행을 계기로 하여 최초로 「한국필름콘덴서 연구조합」이 설립되었으며 1986년 5월에 산업기술

연구조합육성법을 제정·시행하기에 이르렀다.

'82년 11개의 연구조합이 설립된 후 '85년에는 23개, '86년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이 제정된후 매년 6개 이상 설립되어 '95년 1월말 현재 총 57개가 설립·운영 중이며 연구조합원사는 '82년 56개사에서 '93년 말 1,210개로 증가하여, 과거 1개조합당 조합원사가 '82년 4.6개사에서 '93년에는 약 18.6개사로 크게 늘어나는 등 양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성장하였다. 특히 '90년대 이전에는 조합의 기능이 기술개발과 관련한 정보의 수집·보급·교류 및 공동연구과제의 발굴·선정 등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지원 수준에서 머무르는 교류중심형 연구조합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연구개발과제의 복합화, 시스템화, 거대화, 장기화로 인하여 연구조합의 형태도 기존의 단순 행정지원수준에서 벗어나 자체연구시설을 보유하고 그 시설을 이용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중심형 연구조합, 어떤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지역중심형 연구조합 등 다양화되고 있다. 연구중심형 연구조합은 그룹계열사간 공동연구 필요성으로 인하여 대기업그룹을 중심으로 시작하였으며 대표적인 것으로는 두산그룹의 두산기술원, 대우그룹의 고등기술연구원, 통일그룹의 세계평화기술연구소 등이 있다.

산업별 연구조합을 살펴보면, 전기·전자가 18개(32%)로 가장 많으며, 기계·금속이 17개로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화공 7개, 소프트웨어 6개, 기타 9개 조합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연구인력과 시설 등 독자적인 연구개발능력을 보유한 조합은 총 57개 조합 중 연구중심형 연구조합인 대우그룹의 고등기술연구원, 두산그룹의 두산기술원 등 2개 조합에 불과한 실

정이다.

국가연구개발체제에 비추어 연구조합의 연구개발투자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총연구개발투자비의 0.03%로 일본의 0.5%에 비하여 낮으며 정부부문의 연구개발투자도 0.2%로 일본의 3%에 비하여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특히 연구조합의 총연구개발비 가운데 정부지원연구비의 비율은 17.6%에 머물러 일본의 50% 수준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연구조합의 연구개발활동은 주로 과학기술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정연구개발사업 또는 통상산업부가 주관하고 있는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의 참여를 통한 정부지원금 지원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 외에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을 통한 공업발전기금 등의 정부자금융자 지원을 재원으로 수행하고 있다.

연구조합에 대한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지원 실적을 보면 '82년부터 '93년까지 10년 동안 총182개 과제에 대해 184억 원이 지원되었다.

특히 '91년부터 특정연구개발사업 중 첨단요소기술 개발사·업내에 산업기술연구조합지원사업을 별도 설치하여 연구조합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원확대를 추진해 왔으며 그 지원실적을 보면 '91년에 고속조립형 조합형 로봇개발과제(수출산업공단 FA연구조합) 등 46개과제에 28.2억 원(추정1.38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92년에는 골판지제조용 접착제 자동배합·장치 개발과제(중부지역 공업단지관리공단 연구조합) 등 24개과제에 15억 원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현재 동사업은 폐지되어 산업기술연구조합을 지원하는 특별한 지원이 없는 실정이다.

한편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의한 연구조합의 연구개발성고가 일부 가시화되고 있는데 유전

공학연구조합에서 유전공학기술을 이용한 간염진단 시약개발, 인쇄회로판 연구조합에서 PCB 검사공정자동화 시스템개발 S/W공학개발연구조합에서 하수도종합관리시스템 개발 등 10건의 기업화 성공과 한국컴퓨터연구조합에서 한국형 개인컴퓨터용 운영체제에 대한 발명특허 등 6건의 국내 발명특허취득실적을 보이고 있어 연구조합의 연구개발성고가 나타나고 있다.

Ⅲ. 비영리 민간법인 연구기관

우리나라 최초로 과학기술 관련 비영리 민간법인연구기관으로 '67년 한국전자계산소가 설립된 이래 '84년 5월 목암생명공학연구소가, '87년 산업과학기술연구소가, '91년에는 한국계면공학연구소가 설립되어 '93년 12월 현재 17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목암생명공학연구소는 (주)녹십자에서 출연하였고 산업과학기술연구소는 포항종합제철(주)에서, 한국계면공학연구소는 순수한 민간의 기부금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다.

동 연구기관의 설립추세를 살펴보면 '67년 2개기관에서 '70년, '78년, '79년 각각 1개씩 설립되었으며 '84년에는 목암생명공학연구소를 비롯하여 3개 기관이 설립되었다. '85년에는 한국방사선연구재단이 설립되고 '87년, '88년, '90년에 각각 1개기관이 설립된 이래 '91년에는 한국계면공학연구소를 비롯하여 4개기관이 설립되었으나 '92년에는 한국컴퓨터기술연구원 단지 1개 기관이 설립된 후에 현재까지 단 1개의 기관도 설립되지 않았다. '91년을 정점으로 동연구기관의 설립이 활성화되지 아니한 것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인정되어 오던 출연금에 대

한 손급산업제도가 개정되어 '91년 1월 1일 부로 기업 또는 개인이동연구기관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한 손급처리가 불인정됨으로써 연구기관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에 한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비영리 민간법인 연구기관의 연구개발활동을 살펴보면 '93년 비영리 법인연구기관의 총연구인력은 약 1000명에 달하고 총연구개발투자비는 약 600억 원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93년 총연구인력 156,000명의 0.64%, 총연구개발 투자비의 0.9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국가연구개발체제의 틀속에서의 연구개발활동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Ⅳ. 민간생산기술연구소

민간생산기술연구소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축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기술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위하여 중소기업자 등이 업종별 기능별로 공동으로 설립하는 비영리특별법인 형태의 연구소이다.

그러나 '94.12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축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동내용의 일부가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로 흡수됨에 따라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형태는 재단법인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민간생산기술연구소로 설립된 연구소는 자동차 부품종합기술연구소 등 8개소에 이르고 있다.

Ⅴ.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제도

1. 연구조합에 대한 지원

연구조합에 대한 지원은 자금지원, 조세지원, 기타지원으로 대별할 수 있다. 자금지원은 크게 보조금지원, 융자금 지원, 신용보증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보조금 지원은 정부가 특정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연구조합에게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분(50%~80%)을 보조하는 제도로서 정부보조금 지원과제가 연구개발에 성공했다고 판단되면 지원보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로 징수하고 있다. 단, 과제가 실패했을 경우에는 보조금지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징수를 면제하는 지원제도로서 수혜자의 입장에서 보면 보조금 제도라기보다는 조건부 무이자 융자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보조금지원제도에는 과학기술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정연구개발사업과 통상산업부의 공업기반 기술개발사업에 의한 연구비지원제도가 있다.

융자금지원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연구개발자금을 융자하고 성공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상환받는 제도로서 공업발전기금 등 관련 기금에 의한 저리융자지원, 한국산업은행 등 금융기관에 의한 일반금리수준의 융자지원, 신기술사업 금융회사에 의한 융자지원이 있다. 일반금리보다 낮은 저리융자지원의 공업발전기금은 연 6.5%로 시제품개발의 경우 8억 원까지 첨단산업의 경우 무제한으로 지원하고 있다. 일반융자차원에서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의 융자금이 있으며 신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한국종합기술금융(주), 한국기술금융(주), 한국기술진흥금융(주)의 융자금지원이었으나 일반금리로 대출되므로 지원의 차원으로 보기 어렵고

실적도 저조한 실정이다.

한편 기술신용보증은 기술을 개발하거나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산업기술연구조합이 금융기관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경우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시, 기업의 신용을 평가하여 보완해 주는 제도로 '89년 4월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그 업무를 맡고 있다.

'95년에는 기술신용보증으로 1조 7000억 원을 공급할 예정이어서 기술신용보증의 활발한 이용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우수한 기업 및 각종 기술개발 관련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기술력 위주로 심사하여 보증지원하는 기술우대보증제도도 있다. 연구조합에 대한 조세지원은 연구조합에 대한 지원과 조합원사에 대한 지원으로 구별할 수 있다. 조합에 대한 지원으로는 관세법 제28조 5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술연구조합(기술개발을위한 공동연구시설을 갖추고 자연계분야의 학사이상 학위를 가진 3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한 연구조합)이 기술개발을 위하여 외국에서 수입하는 연구용 물품에 대해서 해당관세의 80%~100%를 감면하는 관세감면지원제도가 있다. 시험연구용 견본품을 수입하는 경우 특소세를 면제하는 시험·연구용 견본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제도 및 조합이 조합원사에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시험용 시설투자에 지출한 경우 투자금액의 5%(국산기자재는 10%)에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거나 당해자산 취득가액의

50%(국산기자재는7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해 주는 연구시험용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감가상각제도가 있다.

1) 연구조합의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지원 시책

연구조합의 조합원에 대한조세지원으로는 기술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4조,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사가 연구조합에 납부하는 회비·연구개발분담금 등을 기술개발준비금에서 손비처리할 수 있게 하는 기술개발준비금제도가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조합원이 조합에 납부하는 연구개발분담금의 일정률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가 있다.

기타 지원으로는 전문연구요원제도가 있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자금, 시설, 정보 등과 더불어 연구개발자원의 주요 구성요소의 하나인 연구인력의 원활한 확보지원을 위하여 군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연구기관이 채용하는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에 대해 5년간 연구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병역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2) 비영리법인 민간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비영리법인 민간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은 산업기술연구조합에 대한 지원제도와 유사하나 법률적 성격의 차이로 상이한 경우가 약간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 기관에 대한 지원도 자금지원, 조세지원, 기타지원으로 대별할수 있는데 자금지원은 크게 보조금지원, 융자

금 지원, 신용보증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은 정부가 특정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연구기관에게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분(50%~80%)을 보조하는 제도로서 정부보조금 지원과제가 연구개발에 성공했다고 판단되면 지원보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로 징수하고 있다. 단, 과제가 실패했을 경우에는 보조금지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징수를 면제하는 지원제도로서 수혜자의 입장에서 보면 보조금 제도라기보다는 조건부 무이자 용자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보조금지원제도는 과학기술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의한 연구비지원제도가 있다.

비영리법인 민간연구기관에 대한 조세지원 시책으로는 관세법 제28조 5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술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시설을 갖추고 자연계분야의 학사이상 학위를 가진 3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한 법인)이 기술개발을 위하여 외국에서 수입하는 연구용 물품에 대해서 해당관세의 90%를 감면하는 관세감면지원제도가 있다. 시험연구용 견본품을 수입하는 경우 특소세를 면제하는 시험·연구용 견본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제도 및 지방세법 제2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한 연구소가 연구소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면제제도가 있다.

기타 지원으로는 전문연구요원제도가 있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자금, 시설, 정보 등과 더불어 연구개발자원의 주요구성요소의 하나인 연구인력의 원활한 확보지원을 위하여 군소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연구기관이 채용하는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에 대해 5년간 연구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병역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3) 민간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한 지원

민간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금지원, 조세지원, 기타지원으로 대별할 수 있다. 자금지원은 크게 보조금지원, 신용보증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보조금 지원은 정부가 특정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연구조합에게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분(50%~80%)을 보조하는 제도로서 정부보조금 지원과제가 연구개발에 성공했다고 판단되면 지원보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로 징수하고 있다. 단, 과제가 실패했을 경우에는 보조금지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징수를 면제하는 지원제도로서 수혜자의 입장에서 보면 보조금 제도라기보다는 조건부 무이자 용자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보조금지원제도는 과학기술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정연구개발사업과 통상산업부의 공업기반 기술개발사업에 의한 연구비 지원제도가 있다.

조세지원시책으로는 관세법제28조 5의 규정에 의하여산업기술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법인(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시설을 갖추고 자연계분야의 학사이상 학위를 가진 3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한법인)이 기술개발을 위하여외국에서 수입하는 연구용물품에 대해서 해당 관세의 90%를 감면하는 관세감면지원제도가 있다. 시험연구용 견본품을 수입하는 경우 특소세를 면제하는 시험·연구용 견본품에 대

한 특별소비세 면제제도 및 지방세법 제2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한 연구소가 연구소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면제제도가 있다.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규정에 의거 내국인(기업)이 공공법인에 출연금 또는 위탁연구비를 지급할 경우 손금으로 인정함으로써 공공

법인의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공공법인을 활용하기위한 제도인 내국인의 공공법인에 대한 출연금·위탁연구비의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제도가 있다.

기타 지원으로는 전문연구요원제도가 있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자금, 시설, 정보 등과 더불어 연구개발자원의 주요 구성요소의 하나인 연구인력의 원활한 확보지원을 위하여 군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연구기관이 채용하는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에 대

〈표 1〉연구기관별 지원제도의 특성비교 (0:수혜, X:불수혜)

내 용	부설연구소형태	연구조합	연구법인	민간생산기술연구소	영리연구법인
[조세지원]					
◦ 기술개발준비금	○	*	*	*	○
◦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	*	*	×
◦ 연구시험용 시설투자 세액공제 또는 특별상각	○	○	*	*	×
◦ 연구개발용품 수입에 대한 관세감면	80%	80%	90%	90%	×
◦ 시험연구용 견본품에 대한 특소세 면제	○	○	○	○	×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	×	○	○	×
◦ 위탁연구비에 대한 손금처리	비해당	조합 업무비의 일정율을 조합원 법인세에서 공제	○	○	×
◦ 출연금에 대한 전액 손금처리	×	×	×	○	×
[자금지원]					
◦ 연구개발비 정부출연지원 (주관기관)					
- 특정연구개발사업	○	○	○	○	○
- 공업기반개발사업	○	○	○	○	×
◦ 기술신용보증지원	○	○	○	○	×
[연구요원확보 지원]					
◦ 전문연구요원제도	○	○	○	○	×

주: *은 적용받을 수 있으나 비영리이므로 실익이 없어 거의 이용하지 않는 제도임.
 자료: 과학기술처, 산업기술개발지원안내, 1995. 4 참조하여 작성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민간기술연구소 운영편람, 1993. 2 참조하여 작성

해 5년간 연구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병역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비영리민간연구기관에 대한 정책적 지원제도는 각 기관별로 그 법률적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즉, 산업기술연구조합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비영리법인민간연구기관은 민법에 의하여 민간생산기술연구소는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기 때문에 지원제도도 법인성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이들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제도의 특성을 비교하면 <표 4>와 같이 비영리법인 민간연구기관은 현행 산업기술개발 지원제도의 대부분이 적용되어 법인세, 관세, 특수세, 지방세 등에 대한 제도를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출연금에 손금 불산입으로 연구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이 어려운 점이 다른 기관에 비하여 불리하다고 할 수 있다.

연구조합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상의 세

제 및 지원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전문연구요원의 병역특례도 가능하나 현재로는 산업기술개발 지원제도의 주적용 대상인 기업부설연구소의 형태보다 다소 불리하다. 즉, 조합사가 부담하는 연구개발분담금과 회비 중 회비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영리 특수법인 형태의 민간생산기술연구소는 현행 비영리 연구법인과 같이 산업기술개발제도의 대부분이 적용되어 법인세, 관세, 특수세 등의 면제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조세제법상 공익법인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출연금에 대한 손금산입이 인정되고 있어 자금조달에 별 어려움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VI. 일본의 비영리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1. 연구조합에 대한 지원

일본의 광공업기술연구조합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크게 조세(국세·지방세) 지원과 정부의

<표 2> 연구조합에 대한 조세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정자산의 압축기장 (조세특별조치법 제66조의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험연구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산목록에 1원으로 압축기장함 취득가격과 장부가격의 차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금산입함 시험연구용 고정자산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및 그 부속설비, 구축물,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및 비품 등의 고정자산, 광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전기가스 공급시설이용권, 토지 및 지상권 등을 포함함(조세특별법 시행령 제 39조의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정자산세의 경감 (지방세법부칙 제15조 제26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조합법 제14조제1항의 승인을 득한 시험연구용 고정자산(취득가격이 200만 엔 이상)에 대하여 고정자산세를 취득후 3년간 5/6로 경감함.

자료: 日本通産政策廣報社, 産業技術振興施策便覽, 1994.

자금지원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조세지원은 연구조합자체에 대한 지원과 조합을 구성하고있는 조합원사에 대한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합원사에 대한 지원은 조세특별조치법 제 18조 및 제52에 의한 연구조합에 납부한 경비 부과금에 대한 특별상각제도가 있다. 또한 동부과금은 조세특별조치법 제 42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연구비로 인정되므로 증가시험연구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연구조합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납부한 부과금으로 구입 또는 제작한 시험연구용고정자산의 장부가격을 1원으로 압축기장할 수 있는 고정자산 압축기장 제도가 있다. 또한 취득가격과 압축기장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년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으며 조합법 제14조 제1항의 승인을 받은 시험연구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제26항에 의하여 고정자산세를 경감해주는 고정자산세 경감제도가 있다.

2. 시험연구법인에 대한 지원

1) 시험연구법인과 공익법인

민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은 "공익과 관련하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익법인에는 과학기술(자연과학에 관계하는 것에 한한다)에 관련된 시험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연구법인과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는 특수법인 연구기관이 속하고 있다.

시험연구법인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민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비영리법인과 매우 유사하나 ① 과학기술(자연과학에 한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시험연구를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② 과학기술과 관련한 시험연구를 하는 자에 대하여 연구자금의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③ 과학기술관련 지식과 사상의 종합적인 보급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은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익법인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과 관련한 비영리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상 공익법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기관은 아직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 조세지원

앞에서 살펴본 공익법인중에서 시험연구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은 크게 공익법인과 관련하여 비과세 및 비수익사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지원과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기부금 손금산입특례지원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공익법인 관련 조세지원은 소득세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다른 공익법인과 마찬가지로 그 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법인으로 인정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며, 또한 법인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수익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 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한다.

시험연구법인에 대한 기부금손금산입 특례 조치는 개인이나 기업이 시험연구법인 등에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정해진 법정손금 한도액내

에서 손금처리를 인정하는 제도인데 일반 기부금과는 달리 시험연구법인 등에 기부금은 낸 경우 일반 기부금보다 법정손금한도액을 높이 설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법인이 일반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법인세법 제37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말자본금/12개월 * 당해사업년도 월수 * 2.5/1000) + (소득금액 * 2.5/100)\} / 2$ 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한도액으로 설정하여 손금처리하고 있는 반면에 시험연구법인 등에 기부금을 낸 경우 일반 기부금 손금한도액의 2배를 손금한도액으로 설정하여 손금처리하도록 우대하고 있다. 개인이 시험연구법인 등에 기부금을 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기부금의 총합계액을 소득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단, 기부금의 합계액이 총소득액(총소득액+퇴직소득+산립소득)의 25/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토록 하고 있다.

이 외에 기타 세제상 특별조치로는 조세특별조치법 제70조에 의하여 상속 또는 유산에 의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증여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시 산입하지 않으며 공익법인에 재산을 기부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또한 시험연구법인에 대해서는 각종의 지방세도 면제되고 있다. 면제되고 있는 지방세에는 주민세(지방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296조 제1항 제2호), 부동산소득세(지방세법 제73조의 4 제1항 제6호), 고정자산세(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시험연구법인에 한한다), (지방세법 제348조 제2항 제12호), 시험연구법인이 영위한 비수익사업에 대한 비과세(지방세법 제72조의

5 제1항 제1호) 등이 있다.

Ⅷ. 결론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기술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체제가 가진 잠재적인 연구개발 능력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시점의 국가가 가진 연구개발체제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국제기술환경의 변화에 대응한다는 견지에서 정부와 민간의 중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을 육성하는 정책도출이 요청된다. 정부와 민간의 중간자 및 매개자 역할은 물론 민간의 자발적인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지원을 규제하고자 하는 국제적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국가정책에서 비교적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던 비영리 민간 연구법인의 효과적 육성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비영리 연구기관은 산업기술연구조합, 비영리 연구법인, 비영리 특수법인 민간생산기술연구소 등 법률적으로 3분화 되어 있어 설립의 법률적 근거가 형태에 따라 다를 뿐만 아니라 동일한 연구개발 기능을 담당하면서도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의한 수혜정도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각 연구법인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사회적 외부효과가 큰 연구개발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관련 법적 근거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가칭). 「비영리 민간연구기관 육성법」을 제정하여 법적 설립근거 및 운영과 지원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관련 법률의 제정 혹은 개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출연금 등 지원제도의 일원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 민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비영리 연구법인은 기업에서의 출연금에 대한 손금산입 불인정으로 기존 기관의 운영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신설법인의 설립도 어렵게 하고 있다(일본 민법 34조는 과학기술계 및 자연계 비영리 민간연구소에 대해 기업이 기부금을 줄 경우 주무부 장관이 인정해 주면, 출연금을 손금으로 산입하고 있다). 반면, 산업기술연구조합은 연구개발분담금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고 있고, 민간생산기술연구소는 조세감면 규제상의 공익법인으로 인정되어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등 차등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조치의 경우 민법상의 연구법인과 민간생산기술연구소는 적용을 받고 있으나 산업기술연구조합은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둘째, 비영리 연구법인에 대한 기업출연금에 대한 손금산입을 인정할 경우, 국가세수의 감소가 우려될 수도 있고,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금 인정이 기업의 절세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인은 이들 기관의 운영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여하되 실질적인 감독고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따르는 문제이다.

셋째, 지원의 수준은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지원을 상회하는 차원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연구성과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비영리연구기관의 연구개발성과가 상업화 및 기업화로 연결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한 점을 감안할 때, 연구성과가 일정기간이 지나도 상업화되지 못할 경우 비영리 연구기관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청된다.

【참고문헌】

- 1) 과학기술처, 산업기술개발지원안내, 1995. 4
- 2) 과학기술처, 산업기술연구조합 설립안내, 1992. 2
- 3)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의 효율적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1989
- 4)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일본 광공업기술연구조합과의 기술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1993. 8
- 5)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민간기술연구소 운영편람, 1995. 2
- 6)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업기술백서, 1993
- 7) 과학기술처, 과학기술연감, 1995
- 8) 日本通産政策廣報社, 産業技術振興施策便覽, 1994
- 9) 장동훈, 이장재, 비영리 민간연구기관 육성방안에 관한 소고, 1995. 3